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단5013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5. 12. 10.

판결 선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1999. 6.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자신의 언니인 C에게 위임하였다.

○ D은 C의 남편으로서 피고의 형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부터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과 사이에 2012. 4. 11.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위 매매계약은 D이 C로부터 복대리권을 수여받아 체결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하더라도 C가 2011. 9.경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E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D에게 복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108호

[도로명주소] 서울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 4층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

지층 354.48㎡

1층 354.77㎡

2층 361.54㎡

3층 364.54㎡

4층 75.17㎡(옥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위 건물 중

제1층 제108호

철근콘크리트라멘조 4.58㎡

구매시설(소매점)

대지권의 표시

소재 지번 : 1. 서울시 양천구

지 목 : 대

면 적 : 10012.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0012.1분의 3.59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112호[도로명주소] 서울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 4층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

지층 354.48㎡

1층 354.77㎡

2층 361.54㎡

3층 364.54㎡

4층 75.17㎡(옥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위 건물 중

제1층 제112호

철근콘크리트라멘조 4.58㎡

구매시설(소매점)

대지권의 표시

소재 지번 : 1. 서울시 양천구

지 목 : 대

면 적 : 10012.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0012.1분의 3.59

3.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113호[도로명주소] 서울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 4층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

지층 354.48㎡

1층 354.77㎡

2층 361.54㎡

3층 364.54㎡

4층 75.17㎡(옥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위 건물 중

제1층 제113호

철근콘크리트라멘조 4.58㎡

구매시설(소매점)

대지권의 표시

소재 지번 : 1. 서울시 양천구

지 목 : 대

면 적 : 10012.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0012.1분의 3.59

4.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계상가동 제1층 114호[도로명주소] 서울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 4층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

지층 354.48㎡

1층 354.77㎡

2층 361.54㎡

3층 364.54㎡

4층 75.17㎡(옥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위 건물 중

제1층 제114호

철근콘크리트라멘조 4.58㎡

구매시설(소매점)

대지권의 표시

소재 지번 : 1. 서울시 양천구

지 목 : 대

면 적 : 10012.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0012.1분의 3.59

5.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재상가동 제1층 120호[도로명주소] 서울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층레브 4층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

지층 354.48㎡

1층 354.77㎡

2층 361.54㎡

3층 364.54㎡

4층 75.17㎡(옥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위 건물 중

제1층 제120호

철근콘크리트라멘조 7.11㎡

구매시설(소매점)

대지권의 표시

소재 지번 : 1, 서울시 양천구

지 목 : 대

면 적 : 10012.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0012.1분의 5.56

6.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122호

[도로명주소] 서울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 4층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

지층 354.48㎡

1층 354.77㎡

2층 361.54㎡

3층 364.54㎡

4층 75.17㎡(옥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위 건물 중

제1층 제122호

철근콘크리트라멘조 5.89㎡

구매시설(소매점)

대지권의 표시

소재 지번 : 1. 서울시 양천구

지 목 : 대

면 적 : 10012.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0012.1분의 4.61

